

성인가족 돌봄시간의 영향요인*

Influencing Factors of Family Caregiving Time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노혜진**

Dept. of Social Welfare, KC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Noh, Hye Ji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검토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량에 기초하여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 및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하루에 115분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취업자가 많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이면서 고연령인 경우, 기혼상태이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뿐만 아니라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돌봄과 다른활동시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시간은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는 반면, 가사노동 시간과는 보완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은 고강도 가족돌봄일 때 더욱 명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기적인 가족돌봄실태조사의 실시, 가족돌봄지원정책의 확대, 그리고 돌봄대상과 속성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속성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등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족돌봄, 생활시간조사, 성인돌봄, 비공식돌봄, 돌봄시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actual state of family care on the basis of the exact amount of time, and to verify its influencing factors and results. To this end, family caregiving was analyzed using the 2019 Korean Time Us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time spent on adult family care was 115 minutes per day, a large proportion of family caregivers were women, the average age was relatively high, there were many unemployed, and household income was relatively low. Second,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revealed that those who were women, older, married, and of a low household income had a considerable likelihood of becoming a family caregiver and had a longer caring time. Thir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 and other activities showed that the family caregiving time was in a substitute relationship with paid work or leisure time, but it was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housework time, which was more evident in the case of high-intensity family caregiving.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implementation of regular family care surveys, expansion of family care support policies, and modification of support for caring time according to the nature, goals, and attributes of caregivers.

Key Words: family caregiving, time use survey, adult care, informal care, caring time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5876)

**주저자, 교신저자: 노혜진(zizizi79@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3-3453-721>

I. 서론

전세계 인구 중에서 약 40%가 생애 기간 중에 비공식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Carmichael & Ercolani, 2016).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의 속성을 고려해볼 때 40%는 과소 추정된 수치일 수도 있다. 다수의 인구는 돌봄의 주체가 되고, 또 누군가는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봄의 결핍, 돌봄의 위기 문제는 핵심적인 신사회위험으로 부상하였고, 돌봄의 사회화는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Daly & Lewis, 2000; Huber & Stephens, 2004; Talyor-Gooby, 2004).

돌봄의 사회화는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육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확대되었다(Esping-Andersen, 1999). 탈가족화는 '개인이 가족관계나 혼인상태, 가족내 무급돌봄노동을 제공하거나 받은 것과 관계없이 유급노동이나 사회보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Lister, 1994). 이에 대해 에스핑앤더슨은 '가족의 복지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는 정도'로 탈가족화를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탈가족화는 개념 정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의 책임과 부담을 국가나 시장을 통해 완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가족화 정책의 확대를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적돌봄이 확대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영역을 채우는 것은 무급으로 가족이 수행하는 비공식 돌봄이다(Van Houtven & Norton, 2004; Van den Berg & Hassink, 2008).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돌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데, 이에 반해 가족의 규모는 작아지고 가족안정성도 줄어들어 따라 돌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원으로서는 가족구성원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더불어 여성고용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가족돌봄자(family caregiver)의 전통적인 풀(pool)도 좁아졌다.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돌봄제공 인력풀이 줄어들어 따라 가족돌봄자가 맡게 되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시간집약적인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Carmichael, Charles & Hulme, 2010), 무급 비공식돌봄은 결과적으로 가족돌봄자의 건강과 웰빙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족돌봄 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Heitmueller, 2007; Lilly, Laporte & Coyte, 2010; Van Houtven, Coe & Skira,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자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면서 비공식돌봄을 공식화하려는 노력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돌봄제공자의 돌

봄가치에 대한 인정, 돌봄자원의 재분배, 돌봄노인과 돌봄제공자의 욕구대변을 중심으로 한 돌봄 뉴딜전략을 제안하면서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기반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Auffill, Burgdorf & Wolff, 2019; Yeandle, 2016). 미국 역시 2018년 가족돌봄제공자법(RAIS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을 제정하여 돌봄, 휴식 지원, 정보 및 교육제공, 재정지원 등 전방위 영역에서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남궁은하, 2019; ACL, 201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돌봄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상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가족돌봄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요양비 정책은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등급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5만원 정액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돌볼 경우 등록된 방문요양기관을 통해 제한적으로 급여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책의 경우 제도 도입 후 급여인정액이 감소하고 제한범위가 강화하는 형태로 개편되면서 가족돌봄에 대한 공적 인정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이선희, 2017). 다만, 2019년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가족돌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족돌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족돌봄 실태는 어떠한가?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돌봄 시간은 지난 20년간 약 8분 정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폭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다소 더 높다(통계청, 2019). 그러나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서는 지난 5회의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결과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가족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돌봄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주로 자녀돌봄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가족 돌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김세리·이강이, 2018; 노혜진, 2014; 차은호·유조안, 2020; 권순범·김해중·소효중, 2019). 물론 성인돌봄 시간에 주목한 소수의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로 설문조사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영란, 2007; 하석철, 2016; 김계숙·김진욱,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돌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시간이 다른 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가족을 돌보는 시간량은 얼마이고 집단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누가 성인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가족돌봄시간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가족돌봄시간은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시간 등 주요 활동시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숨겨진 환자(hidden patient)로 지칭되며 문제가 심화되면서도 충분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가족돌봄에 대한 선행연구

가족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돌봄, 치매환자나 암 환자, 호스피스 환자, 장애가족에 대한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돌봄욕구가 특별히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을 다룬 연구의 주제는 돌봄경험, 돌봄부담 및 스트레스와 영향요인, 돌봄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효과, 돌봄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및 정책제안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관련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경험은 가족돌봄 관련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연구주제이고 주로 가족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노인, 치매노인, 암환자, 연명 치료 환자, 뇌졸중 환자, 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맥락에서 가족돌봄자의 경험을 다룬다(임정기·노혜진, 2020; 김태영·조미정, 2020; 배주희·강효정·김남희, 2020; 임정원 외, 2018).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경험은 ‘자기돌봄에서의 결핍과 배제’라고 표현하였고, 치매 가족의 돌봄경험은 ‘고립되는 삶에 얽히고 두려움 속에서 기대와 희망’으로 표현되었다. 뇌졸중 환자 가족의 돌봄경험은 ‘내 삶의 부정적 변화, 돌봄부담감, 희망의 줄기’로 진행되고, 암환자 가족의 돌봄경험에서는 ‘충격적이고 막막한 미래 같은 현실, 세상과 단절, 가족 탈진, 성숙한 돌봄을 위한 가족의 도약’ 등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가족돌봄자들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며 인지재구조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둘째, 희망과 기대가 있더라도 가족돌봄자가 돌봄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돌봄부담 및 스트레스는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이에 가족돌봄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연구주제도 돌봄 및 부양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실태 및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돌봄대상의 인지 및 신체기능이 낮고 통증이 심하면서 돌봄기간이 길수록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희·김정현, 2013; 김정은·최혜경, 2015; 김지현·김홍수, 2017; 박주희, 2019; 이해경·김소울, 2019).

또한 배우자이면서 여성이고, 돌봄대상자와 동거하면서 가족돌봄자의 연령이 높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족돌봄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을수록 돌봄부담은 심화되었다(박상언 외, 2019; 최인희·김정현, 2013; 최윤숙 외, 2016; 박송이·차지영, 2017).

셋째, 돌봄으로 인한 영향과 결과를 다룬 연구에서는 돌봄부담감이 증가할수록 가족돌봄자 측면에서는 불안과 우울을 높이고, 돌봄자기효능감을 낮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낮추거나 사회적 지지도 낮추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생각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정, 2019; 김계숙·김진욱, 2018).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은 돌봄대상자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전반적으로 돌봄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주·이명하·김희선, 2020).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효과 및 정책, 제도도 다루고 있다.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치매돌봄가족의 운동 프로그램, 돌봄교육 서비스 앱 개발, 방문간호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낮병원 이용 등이 돌봄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시키는 영향을 분석한다. 거시적으로 정책 및 제도 단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치매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성년후견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권혁·이재현, 2020; 김혜진·신수진, 2020).

2. 돌봄시간에 대한 선행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돌봄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돌봄경험, 돌봄부담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등 심리사회적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돌봄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 및 양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 돌봄의 구체적 실태 및 양상은 주로 돌봄시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돌봄시간을 다룬 연구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인이나 치매가족, 장애인, 암환자 등 성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자녀돌봄 시간을 다루고 있다(노혜진, 2014; 김세리·이강이, 2018; 차은호·유조안, 2020; 권순범 외, 2019).

자녀돌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에서는 우선 가용시간 이론에 입각하여 부모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돌봄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았는데, 이 이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가용시간을 줄이는 핵심원인인 장시간 근로이다(차은호·유조안, 2020). 그 외에도 부모의 고용지위나 노동환경 역시 자녀돌봄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임금수준이 낮은 부모는 초과수당을 통해 저소득을 벌충하는 과정에서 돌봄시간이 감소하였다. 시간자원 외에 부모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서도 자녀돌봄시간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하는 요소는 바로 부모의 교육수준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증가하며, 고학력 부부간의 동질혼이 자녀 돌봄시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한다(노혜진, 2014; Kalil, Ryan & Corey, 2012). 또한, 상대적 자원이론에 의하면, 아내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 가구내 협상력과 무급노동 배분에 영향을 미쳐 아버지의 자녀 돌봄이 활발해지고 총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4; 차은호·유조안, 2020).

한편, 본 연구와 유사하게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가족의 돌봄시간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노부모나 치매환자, 암환자 등 돌봄대상을 제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란, 2007; 전명수, 2014; 하석철, 2016; 김계숙·김진욱, 2018; 최유정·최미라·최셋별, 2019). 기존연구에서 성인가족 돌봄시간을 조사한 주된 방법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창기 연구로써 가족돌봄자의 노인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의 관계를 다룬 김영란(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노인을 돌보는 4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돌봄시간을 조사하였고, 돌봄시간에 개인위생, 이동, 식사, 가사활동, 치료 및 재활, 정서적 활동 등 10개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 및 노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분석한 최유정 외(2019)의 연구 역시 면접조사 방법을 통해 한국종합사회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734명의 사례를 활용하였고, 돌봄시간은 일주일에 가족을 보살피는 평균시간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암환자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시간을 파악한 김계숙과 김진욱(2018)의 연구도 설문에 응답한 254명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1일 돌봄시간을 12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가족돌봄시간의 실태에 관한 결과를 보면 매우 큰 편차가 발견된다. 동일하게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했다라도 돌봄시간은 한 달 평균 6시간에서 하루 13시간까지 차이가 있다(김영란, 2007; 하석철, 2016). 또한 돌봄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돌봄으로 모두 포괄한 최유정 외(2019)의 연구에서 기혼남녀의 가족돌봄시간이 남성은 일주일 평균 6.25시간, 여성은 16.5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에서 가족돌봄시간의 실태에 편차가 큰 이유는 돌봄시간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일지가 아니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함에 따라 응답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측정하고 있는 돌봄행위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며, 돌봄대상 역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우선 가족돌봄자 특성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이고 돌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 돌봄시간이 증가하였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돌봄시간이 감소하였다(김영란, 2007; 하석철, 2016). 연령은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는데 가족돌봄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김영란, 2007)와 감소한다는 결과(최유정 외, 2019)가 공존한다. 가족돌봄자의 건강상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때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최유정 외, 2019), 시간량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가족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쁠 때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해경, 2012).

가족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속성이 가족돌봄자의 취업과 관련된 상태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돌봄자가 비취업상태일 때 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김영란, 2007; 하석철, 2016). 가족을 돌보는 주된 주체는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흥미로운 것은 여성 본인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가족돌봄시간이 감소하지만, 남편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여성의 가족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정 외, 2019).

가족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돌봄자 다음으로 주목하는 요인은 돌봄대상의 속성이다. 돌봄대상자의 상태가 중증이거나 기능적 제한수준이 높을 때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07; 하석철, 2016). 돌봄대상의 연령은 역시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는데, 돌봄대상이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하석철, 2016)와 감소한다는 결과(김영란, 2007)가 공존한다. 그 외에 돌봄대상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남성일 때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자녀돌봄이 아닌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돌봄시간에 주목한 국내연구를 검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연구는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돌봄시간에 매우 큰 편차가 발견된다. 그로 인해 다른 활동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성인 가족의 돌봄에만 투입하는 시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유사한 주제를 다룬 국외연구를 살펴보았다. 다른 유사활동의 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때 가족돌봄자의 돌봄시간은 1주일에 10시간 정도로 나타났고, 눈에 띄는 점은 성인가족을 돌보는 시간량의 차이에 있어 가족돌봄자의 성별차이가 없다는 것이다(Lilly et al, 2010; Carmichael & Charles, 2003). 특히 Stanfors, Jacobs & Neilson(2019)은 가족돌봄시간이 다른 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가족돌봄자 중에서 85%가 하루에 90분 이상 돌봄을 수행하였고, 가족돌봄자인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90분 이상 가족돌봄에 시간을 사용했느냐를 기준으로 저강도 돌봄과 고강도 돌봄으로 구분하여 돌봄자체가 아니라 돌봄강도가 다른 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는데, 저강도일 때는 가사노동시간만 증가하지만, 고강도일 때 유급노동과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을 돌보는 시간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 및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2019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였다. 성인돌봄 관련 조사는 2014년도까지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그 외 가구원 돌보기’ 등 돌봄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5개 영역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2019년부터 장기돌봄 필요 성인돌보기, 독립적인 성인돌보기 등 2개 영역 5개 항목으로 조사항목이 재편되었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이 24시간의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2일씩 시간일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9 생활시간조사는 12,388가구의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 26,091명을 대상으로 응답자당 2일씩 시간일지를 작성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52,182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한편 시간사용 실태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사용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체적 돌봄 및 일상 업무 돕기, 간호하기 등의 활동을 아동이 성인이나 가족 내 다른 구성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분석대상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최종 분석대상은 47,056사례이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가족돌봄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장기돌봄 필요 성인돌보기’와 ‘독립적인 성인돌보기’ 등 2개 영역으로 조사하는데, ‘독립적인 성인돌보기’의 경우 특정 기간에 수행한 일시적인 돌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만 활용하였다. 장기돌봄 필요 성인돌보기는 3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신체적 돌봄 및 일상 업무 돕기, ②간호하기, ③기타 돌보기 등으로 구분된다(〈표 1〉). 그런데 돌봄이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 자체만 수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활동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행동은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한 가지 행동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동시행동은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주행동 이외의 행동을 의미한다(통계청,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돌봄 필요 성인돌보기 활동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모두 포함시켰다.

〈표 1〉 가족 돌봄시간에 포함된 활동

구분	영역	세부 활동
주행동	장기돌봄 필요 성인돌보기	신체적 돌봄 및 일상업무 돕기, 간호하기, 기타돌보기
	이동	장기돌봄 필요 성인돌보기 관련 이동
동시행동	장기돌봄 필요 성인돌보기	신체적 돌봄 및 일상업무 돕기, 간호하기, 기타돌보기
	이동	장기돌봄 필요 성인돌보기 관련 이동

다음으로 가족돌봄 행위여부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과 가족 등 2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개인 영역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년수, 종사상의 지위, 근로형태 등 5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생활시간 조사 교육정도는 학력을 중심으로 범주형변수로 조사를 하는데 이를 교육년수로 전환하여 투입하였다.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통합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으로 분류하였다. 가족 영역에서는 가구원 수, 가구소득, 혼인상태 등 3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코딩된 원자료를 무배우와 유배우로 재코딩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부터 800만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구성된 범주형으로 코딩된 자료를 범주의 평균값으로 전환하여 지수하여 투입하였다. 그 외에 시간사용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주말 여부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한편, 가족돌봄시간 및 돌봄자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돌봄대상의 속성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요하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돌봄대상이 노인인지 장애인인지,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시간이 다른 영역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변수를 활용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표에서 ‘일’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인 법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일, 가계비법인기업의 일, 무급가족 일 등 6개 활동을 모두 포함한 합산값을 투입하였다. 가사노동은 ‘가정관리’ 영역에 포함된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8개 활동의 총시간량을 투입하였다. 여가시간은 ‘문화 및 여가활동’에 포함된 문화 및 관광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등 6개 활동을 모두 포함한 총량을 투입하였다. 한편, 이 때 다른 영역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가족돌봄자 변수 외에 돌봄강도 변수를 투입하였다. 돌봄강도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에 장기돌봄에 투입하는 시간이 90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저강도와 고강도로 구분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Stanfors et al., 2019).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인 가족돌봄시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의 영향요인 및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빈도분석과 평균비교분석(independent samples t-test), 분산분석(ANOVA) 등을 통해 누가 가족돌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어떠한 요인이 가족돌봄자가 되는 것과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

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시간이 유급노동이나 가사노동, 여가시간 간의 관계 및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돌봄자 및 가족돌봄시간 실태

1) 인구학적 특성

본 절에서는 가족돌봄자 및 가족돌봄시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하루에 가족돌봄에 전혀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 미돌봄자와 비교하여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3.4%로 미돌봄 집단보다 약 10%p 높고, 평균연령은 무려 11세 높은데, 전체 가족돌봄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무려 59.9%로써 가족돌봄자의 고연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의 비율이 79.0%로 미돌봄자 집단보다 뚜렷하게 높았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 특성을 보면 비취업자가 59.0%로 돌봄미제공자와 비교해 뚜렷하게 높았고, 취업상태에 있더라도 시간제 근로비중이 높고 상

용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 가족돌봄자의 주요 시간량

다음으로 가족돌봄자의 주요 시간량 실태를 검토하였다(<표 3>). 가족돌봄을 1분 이상이라도 수행하는 집단만 선별했을 때 하루에 성인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 시간은 115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연구가 지금까지 가족돌봄자의 돌봄시간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방식에 기초하여 돌봄시간을 입력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과잉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돌봄의 속성상 가사노동 등 다른 활동과 동시에 수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활동시간까지 모두 돌봄에 포함시켜 응답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에 10분 단위의 시간일지를 토대로 조사한 생활시간조사에서 다른 활동과의 배타성을 최소화했을 때 하루 평균 가족돌봄자의 돌봄시간은 115분이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오히려 가족돌봄자의 주당 돌봄시간이 약 10시간이라고 보고했던 Carmichael & Charles(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돌봄자의 시간패턴을 보면 돌봄미제공자에 비해 가사노동 시간이 약 60분 정도 길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돌봄의 속성상 가사노동과 병행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가시간이나 유급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가족돌봄자에게서 더 짧게 나타났다.

<표 2> 가족돌봄자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	돌봄	전체		가족	돌봄	전체	
		돌봄자	미제공자	(47,056)		돌봄자	미제공자	(47,056)	
		(727)	(46,329)				(727)	(46,329)	
성별	남성	36.6	46.6	46.4	가구원수	2.7	2.8	2.8	
	여성	63.4	53.4	53.6	돌봄	저강도	53.8	-	0.8
평균연령		62.2	51.0	51.2	강도	고강도	46.2	-	0.7
	20대	1.5	13.5	13.2	가구소득		248.7	336.3	334.8
30대	2.8	15.1	14.9	경제		취업	41.0	62.6	62.2
연령대	40대	12.4	18.8	18.7	활동	비취업	59.0	37.4	37.8
	50대	23.2	19.3	19.3	취업	전일제	57.9	76.7	76.5
	60+	60.1	33.4	33.8	형태	시간제	42.1	23.3	23.5
교육년수		10.7	12.3	12.3	종사상지위	상용	36.6	54.1	53.9
	미혼	7.4	19.0	18.8		임시일용	29.2	19.8	19.9
혼인 상태	유배우	79.0	66.1	66.3	자영업 무급가족	34.2	26.1	26.2	
	무배우	13.6	14.9	14.9					

<표 3> 가족돌봄자의 주요 시간량

	가족돌봄자(N=727)		돌봄미제공자(N=46,329)		전체(N=47,05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인돌봄시간	115.1	119.8	0.0	0.0	1.8	20.6
유급노동시간	111.4	193.7	224.2	262.6	222.5	262.1
가사노동시간	177.4	126.2	120.7	124.8	121.6	125.1
여가시간	286.4	167.4	306.8	185.5	306.5	185.3

3) 집단별 가족돌봄 시간

이번에는 주요 인구집단별 가족돌봄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4>를 보면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일 경우 성인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많이 증가하고, 종사상 지위에 따라 가족돌봄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이는 사후분석 결과 비취업과 임시일용, 비취업과 자영업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성별이나 연령대, 혼인상태, 요일별 가족돌봄시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가족돌봄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국외연구 결과와 동일하다(Lilly et al, 2010; Carmichael & Charles, 2003). 통계적 유의도는 없지만, 시간량의 차이만 놓고 보면 39세 이하의 돌봄시간이 가장 짧고 40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혼인상태 역시 통계적 유의도는 없지만, 기혼보다 미혼일 때 가족돌봄시간이 더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돌봄의 책임자에 비혼자녀의 순위가 높은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은숙, 2017).

2. 가족돌봄자 및 돌봄시간의 영향요인

1) 가족돌봄자의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누가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족돌봄에 시간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때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관련된 속성은 상용직을 기준으로 비취업상태일 때에만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근로형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평일과 주말 여부 역시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과 비취업상태일 때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국외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Stanfors

et al., 2019).

이러한 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하면, 혼인상태와 종사상의 지위 측면에서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된다.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는 상태는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여성에게는 반대로 배우자가 있을 때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의 돌봄을 주로 딸과 며느리 등 여성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사상의 지위에서도 비취업 상태가 남성에게는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여성에게는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2) 가족돌봄 시간의 영향요인

다음으로 가족돌봄자에 이어 가족돌봄 시간에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표 5>의 모형과 동일하게 분석을 하였으나, 종사상의 지위나 근로형태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아 취업여부 변수만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본적인 결과는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에 미치는 요인과 방향이 동일하다. 여성이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이면서 비취업일 때 가족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비취업,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돌봄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기존연구결과와 동일한데(김영란, 2007)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과 시간량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다만 가구원수의 경우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가족돌봄시간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 6>를 보면 가족돌봄시간의 영향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성의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남성의 가족돌봄시간도 증가하였고, 혼인상태나 가구소득은 돌봄시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돌봄시간이 증가하거나 배우자가 있

<표 4> 집단별 가족돌봄시간

(N=727)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13.4	114.6	-.301	경제 활동	취업	95.2	90.8	-4.040***
	여성	116.2	122.8			비취업	129.0	134.8	
연령대	39세 이하	98.7	104.2	1.165	취업 형태	전일제	95.5	90.4	-.152
	40-49세	131.3	122.8			시간제	97.5	98.1	
	50세 이상	113.6	120.1		상용	99.0	94.7		
혼인 상태	미혼	123.2	135.7	.510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92.9	92.3	4.564**
	기혼	114.5	118.5			자영무급가족	95.3	88.3	
요일	평일	114.1	120.8	-.289		비취업	128.9	134.9	
	주말	116.7	118.5						

〈표 5〉 가족돌봄자의 영향요인

	전체(N=47,056)		남성(N=21,846)		여성(N=25,210)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기준: 남성)	.694***	.119				
연령	.042***	.005	.032***	.007	.070***	.008
교육년수	.017	.015	.011	.020	.024	.021
가구원수	.387***	.050	.450***	.071	.453***	.070
가구소득	-.003***	.001	-.003***	.001	-.004***	.001
혼인상태(기준: 무배우)	.826***	.143	-.448*	.202	1.768***	.188
종사상지위(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416	.256	.247	.410	.498	.326
자영업무급가족종사	.223	.190	.503	.261	-.084	.283
비취업	.733***	.174	1.400***	.261	-.003	.233
근로형태(기준: 전일제)	.206	.262	.792	.423	-.439	.326
요일(기준: 평일)	-.079	.101	-.045	.144	-.101	.142
Constant	-8.456***	.480	-7.364***	.589	-9.646***	.721
X ²	372,505***		200,765***		254,286***	
-2LL	3,997.488		2,006.383		1,889.098	
Nagelkerke R ²	.092		.097		.130	

*p<.05, **p<.01, ***p<.001

〈표 6〉 가족돌봄시간의 영향요인

	전체(N=47,056)		남성(N=21,846)		여성(N=25,210)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기준: 남성)	.867**	.306				
연령	.048***	.012	.044**	.014	.085***	.021
교육년수	-.012	.046	.024	.056	-.034	.079
가구원수	.091	.146	.422*	.176	.173	.255
가구소득	-.004**	.001	-.002	.001	-.008***	.002
혼인상태(기준: 무배우)	1.699***	.388	-.688	.507	5.016***	.642
취업여부(기준: 취업)	2.126***	.333	3.412***	.451	.454	.515
요일(기준: 평일)	-.126	.280	-.240	.334	.090	.484
Constant	-6.535***	1.325	-4.471**	1.426	-7.869***	2.132
R ²	.007***		.009***		.012***	

*p<.05, **p<.01, ***p<.001

을 때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돌봄시간이 노동 및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

1) 가족돌봄시간과 노동 및 여가시간 간의 관계

본 절에서는 가족돌봄시간과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 여가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7〉을 보면,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4개의 주요 활동시간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시간은 유급노동 및 여가

시간과 부적 관계에 있었고, 가사노동과는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가족돌봄과 여가시간간 유의도가 사라졌고, 여성은 가족돌봄시간과 가사노동간의 유의도가 사라졌다.

2) 가족돌봄시간이 노동 및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개인 및 가족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돌봄시간이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가족돌봄자의 영향력에 관한 결과만 〈표 8〉에 제시하

였다. 가족돌봄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가족돌봄자인 경우에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유급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돌봄시간과 유급노동 시간이 대체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Stanfors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업상태에 있는 대상만 선별하여 분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돌봄과 유급노동 시간 대체관계가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돌봄노동은 그 속성상 가사노동과 병행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돌봄이 필요한 성인가족을 돌보고 간호하는 과정에서 식사준비, 청소 등의 가사노동이 동반되거나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돌봄가족자가 될 경우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인 경우 돌봄가족자인 경우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지만 여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돌봄자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일반적으로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인이 할당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생활시간 중에서 여가시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돌봄노동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이나 성별로 구분할 때 모두 공통적으로 돌봄노동자인 경우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돌봄 강도가 노동 및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편, 돌봄노동과 다른 활동시간 간의 대체효과가 돌봄강도가 강해질 경우 더욱 뚜렷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Stanfors et al., 2019)에 착안하여 하루에 수행하는 돌봄시간 90분을 기준으로 저강도 돌봄과 고강도 돌봄으로 구분하였고, 돌봄강도가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9>를 보면 실질적으로 돌봄노동시간과 유급노동 및 여가활동시간 간에 나타나는 대체효과는 고강도 돌봄일 때 발생하는 현상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 다시 말해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을 돌보는 것 자체가 여가시간이나 유급노동시간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시간으로 이어질 때 주요 활동시간의 감소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돌봄의 강도에 관계없이 저강도 집단과 고강도 집단에게서 모두 가족돌봄자일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의 강도에 따른 구분 없이 분석했을 때 여성의 경우 돌봄노동과 유급노동 간 대체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과 다르게 <표 9>를 보면 고강도 돌봄노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유급노동 및 여가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도 높은 돌봄을 담당할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유급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가족돌봄시간의 영향요인

	전체(N=47,056)			남성(N=21,846)			여성(N=25,210)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
가사노동	-.455**			-.401**			-.435**		
여가	-.482**	-.021**		-.621**	.125**		-.430**	.014*	
가족돌봄	-.050**	.030**	-.021**	-.057**	.056**	-.008	-.040**	.011	-.028**

<표 8> 가족돌봄시간이 주요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유급노동		유급노동 (취업자)		가사노동		여가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전체	가족돌봄	-29.953***	9.312	-57.410***	16.443	28.527***	4.749	-46.746***	8.182
	Constant	867.495***	12.722	1,026.326***	17.794	-160.520***	6.488	182.094***	11.178
	R ²	.483***		.287***		.309***		.205***	
남성	가족돌봄	-37.865**	14.240	-72.608**	23.980	36.838***	5.620	-57.750***	11.972
	Constant	835.971***	16.746	964.277***	21.166	41.276***	6.610	33.547*	14.079
	R ²	.456***		.279***		.098***		.243***	
여성	가족돌봄	-12.783	11.375	-34.696	22.026	5.855	7.701	-39.215***	10.879
	Constant	675.216***	16.350	835.007***	27.146	-67.014***	11.070	154.393***	15.637
	R ²	.472***		.262***		.160***		.142***	

*p<.05, **p<.01, ***p<.001

〈표 9〉 가족돌봄 강도가 주요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유급노동		유급노동 (취업자)		가사노동		여가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가족돌봄(기준: 비돌봄)								
전체								
저강도	-8.509	12.985	-18.120	21.738	38.534***	6.622	-13.708	11.406
고강도	-52.012***	13.167	-108.886***	24.848	18.234**	6.715	-80.731***	11.566
Constant	867.501***	12.721	1026.326***	17.791	-160.518***	6.488	182.103***	11.175
R ²	.483***		.287***		.309***		.205***	
가족돌봄(기준: 비돌봄)								
남성								
저강도	-16.437	19.417	-35507	30.746	35.738***	7.665	-28.520	16.322
고강도	-62.130**	20.646	-129.396***	37.983	37.874***	8.146	-90.851***	17.355
Constant	835.893***	16.745	963.820***	21.165	41.280***	6.610	33.440*	14.076
R ²	.456***		.279***		.098***		.243***	
가족돌봄(기준: 비돌봄)								
여성								
저강도	14.903	16.194	15.938	30.018	22.246*	10.965	-2.188	15.483
고강도	-38.690*	15.675	-91.858**	31.865	-9.483	10.614	-73.862***	14.987
Constant	675.372***	16.346	836.123***	27.137	-66.922***	11.068	154.602***	15.630
R ²	.473***		.263***		.160***		.143***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드러나지 않은 가족돌봄의 강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시간량에 기초하여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며 동시에 가족돌봄이 다른 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의 실태를 보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성인 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하루에 115분으로 나타났고,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할 때 가족돌봄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취업자가 많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면서 고연령인 경우, 기혼상태이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돌봄 시간이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시간은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는 반면, 가사노동시간과는 보완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공적 돌봄 지원제도가 확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돌봄의 필요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담론이 공적 돌봄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주로 가족이 수행하는 비공식 돌봄은 주요 의제로 등장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영국과 미

국에서 가족돌봄 관련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대단위 실태조사 결과이다. 국내의 경우 가족돌봄 관련 실태조사 응답자의 주관적 답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따라 돌봄시간에 매우 큰 편차가 발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간량을 비교적 정확히 측정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자료의 특성상 유사한 활동을 모두 제외하고 온전히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만을 측정하여 성인가족 돌봄노동의 실태를 파악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측정은 협소하게 돌봄시간만 측정함에 따라 성인가족을 돌봄으로써 수반되는 다른 활동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가족돌봄자가 느끼기에 과소산출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정기적으로 가족돌봄의 양과 강도를 보다 정확하고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가족돌봄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공적 돌봄체계가 돌봄필요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수행하는 비공식돌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누가 가족돌봄자가 되는가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는 명확하게 여성, 고연령, 저소득, 비취업이나 불안정노동상태에 있을 때 그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집단은 비단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등의 이슈에서도 대표적인 취약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이 있는 집단이 주로 가족돌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에서 가족돌봄이 비공식적 돌봄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가

족돌봄은 사적 탈가족화로 분류되면서 공적 탈가족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적 탈가족화와 공적 탈가족화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현재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인 가족요양비 정책,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가족돌봄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돌봄시간 역시 증가한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돌봄대상과 돌봄주체 모두 노인세대인 노노케어 비율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모두 돌봄대상에게는 돌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가족에게는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정책에서 보장해준 '시간'은 돌봄대상이나 돌봄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가족돌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돌봄시간이 다르고 장시간 돌봄에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더 긴 시간보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에 돌봄대상뿐만 아니라 가구내 돌봄자가 고령이거나 돌봄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간의 차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권순범 · 김혜중 · 소효중(2019).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부부공유 돌봄시간 비교. 가정과삶의질연구, 34(5), 1-19.
- 2) 권혁 · 이재현(202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연구-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42, 195-220.
- 3) 길태영 · 조미정(2020). 재가 치매노인 가족 케어기버의 돌봄 경험. 한국장애인복지학, 47, 31-58.
- 4) 김계숙 · 김진옥(2018). 압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4), 57-97.
- 5) 김세리 · 이강이(2018).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및 시간부족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3), 1-19.
- 6) 김영란(2007). 가족 돌봄자의 노인 돌봄노동시간 및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1(72), 33-70. DOI : 10.33949/tws.2007.1.72.002.
- 7) 김정은 · 최해경(2015). 돌봄대상자의 기여 요인이 가족돌봄노인의 돌봄 부담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2), 123-150.
- 8) 김지현 · 김홍수(2017).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과 노인 가족돌봄제공자의 돌봄스트레스: 방문간호 서비스의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46(6), 836-847. DOI : G704-000229.2016.46.6.009.
- 9) 김혜진 · 신수진(2020). 치매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간호사와 가족돌봄제공자의 인식. 노인간호학회지, 22(1), 34-44.
- 10) 남궁은하(2019). 노인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1, 76-87.
- 11) 노혜진(2014). 부모의 교육적 동질함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1(4), 181-200.
- 12) 박상언 · 김희진 · 김점남 · 박혜정 · 길초롱 · 이지연 · 장희경(2019). 압환자 가족원의 건강정보이해력과 사회적 지지가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3), 291-304.
- 13) 박송이 · 차지영(2017). 고관절 수술 노인가족의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 및 돌봄부담감. Health & Nursing, 29(1), 1-11.
- 14) 박주희(2019)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3), 133-148. DOI : 10.22626/jkfrma.2019.23.3.007.
- 15) 박해경(2012)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대처전략, 안녕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배주희 · 강효정 · 김남희(2020).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가족 돌봄 제공자 돌봄경험. 아시아태평양 융합연구교류논문지, 6(11), 33-47. DOI : 10.47116/apjcri.2020.11.04.
- 17) 오영주 · 이명하 · 김희선(2020). 재가 치매노인 가족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돌봄행위 간의 관계: 돌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인간호학회지, 32(2), 186-198.
- 18) 이민경(2019).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돌봄지원의 조절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4, 121-148.
- 19) 이선희(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53, 89-101.
- 20) 이해경 · 김소울(2019).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6(4), 1373-1384.
- 21) 임정기 · 노혜진(2020). 노인 돌봄가족은 무엇을 경험하고 필요로 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72(4), 151-179.
- 22) 임정원 · 권주연 · 안순희 · 윤은지(2018). 두경부암 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10), 348-360.

- 23) 전명수(2014). 요양노인과 가족 부양자의 특성이 부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274-282.
- 24) 지은숙(2017). 비혼여성의 딸노릇과 비혼됨(singlehood)의 변화: 일본의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0(2), 189-235.
- 25) 차은호 · 유조안(2020).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돌봄시간 격차의 변화와 분해. *한국가족복지학*, 67(3), 5-33. DOI : 10.16975/kjfs.67.3.1.
- 26) 최유정 · 최미라 · 최셋별(2019). 가정 내 역할 수행 및 돌봄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50(1), 1-28.
- 27) 최윤숙 · 배주희 · 김남희 · 태영숙(2016). 노인 암환자 가족원의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 *중앙간호학 연구*, 16(1), 20-29. DOI : G704-SER000008675.2016.16.1.002.
- 28) 최인희 · 김정현(2013).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영향요인 비교연구. *가족과 문화*, 25(3), 159-185. DOI : 10.21478/family.25.3.201309.006.
- 29) 통계청(2019). *생활시간조사기초분석보고서*. 대전: 통계청.
- 30) 하석철(2016). 돌봄은 세대 간에 대갚음되는가?: 모와 성인 자녀 간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8(4), 57-90. DOI : 10.21478/family.28.4.201612.003.
- 31)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ACL](2019). August. RAISE Family Caregiving Advisory Council.
- 32) Aufill, J., Burgdorf, J. & Wolff, J. (2019). June. In Support of family caregivers: A snapshot of five States. milbank memorial fund & The John A. Hartford Foundation.
- 33) Carmichael, F. & Charles, S. (2003). The opportunity costs of informal care: Does gender matter?.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2(5), 781-803.
- 34) Carmichael, F., Charles, S. & Hulme, C. (2010). Who will care? Employment status and willingness to supply informal car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9(1), 182-190.
- 35) Carmichael, F. & Ercolani, M. G. (2016). Unpaid caregiving and paid work over life-courses: Different pathways, diverging outcomes. *Social Science & Medicine*, 156, 1-11.
- 36) Daly, M. &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37)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 University.
- 38) Heitmueller A. (2007). The chicken or the egg? Endogeneity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informal carer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36-59.
- 39) Huber, E. & Stephens, J. D. (2000). Partisan governance, women's employment, and the social democratic service sta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3-342.
- 40) Lilly, M. B., Laporte, A. & Coyte, P. C. (2010). Do they care too much? The influence of caregiving intensity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unpaid caregiver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9(6), 895-903.
- 41) Lister, R. (1994). She has other duties'-Women, citizenship and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and social change: New challenges to the Beveridge model*, 31-44.
- 42) Kalil, A., Ryan, R. & Corey, M. (2012). Diverging destinies: Maternal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al gradient in time with children. *Demography*, 49(4), 1361-1383.
- 43) Stanfors, M., Jacobs, J. C. & Neilson, J. (2019). Caregiving time costs and trade-offs: Gender differences in Sweden, the UK, and Canada. *SSM-population health*, 9, 100501.
- 44) Taylor-Gooby, O. F.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45) Van den Berg B & Hassink WHJ. (2008). Cash benefits in long-term home care. *Health Policy*, 209-21.
- 46) Van Houtven, C. H. & Norton, E. C. (2004). Informal care and health care use of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3(6), 1159-1180.
- 47) Van Houtven, C. H., Coe, N. B. & Skira, M. M. (2013). The effect of informal care on work and wag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2(1), 240-252.
- 48) Yeandle, S. (2016). Caring for our carers. *Juncture*, 23(1), 57-62.

- 투 고 일 : 2021년 03월 21일
- 심 사 일 : 2021년 04월 06일
-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04월 22일